



제2장

법무법인 및 공동법률사무소 현황



제2장 법무법인 및 공동법률사무소 현황

1. 공동법률사무소 유형²

가. 법무법인

법무법인 제도는 변호사 업무의 개선과 전문화·대형화 등 법률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미국의 Law Firm 제도와 기존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및 상법상의 합명회사 제도를 혼합하여 창안되었다.

법무법인은 5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이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법무법인은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다 1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주사무소에는 상기 직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성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표변호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무법인이 그 대표변호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각 구성원인 변호사는 연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설립 후 구성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도 가입 전에 생긴 법무법인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인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또한 구성원 영입, 지분변경, 정관변경, 해산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시 구성원 변호사 전원의 찬성이 요구된다.

나.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은 위와 같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직성과 외부적인 무한연대책임 때문에 대형화·전문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국내 변호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변호사법 개정 시 법무법인(유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무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² “제6편 변호사사무소의 형태와 조직”, 「변호사실무제요」, 대한변호사협회, 2006

법무법인(유한)은 7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그 중 2인 이상이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하며, 구성원 중에서 3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감사는 필요 시 변호사인 자로 1인 이상 둘 수 있다. 법인의 자본총액은 5억 원 이상이며, 각 구성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출자의무가 있다. 법인의 구성원 가입과 탈퇴, 당연탈퇴, 소속변호사,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설치,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수행, 업무집행방법,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변호사의 업무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법무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구성원과 그 지휘·감독자가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외의 구성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지휘·감독자는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무 이외의 일반 채무에 대하여는 구성원이 출자금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다. 법무조합

법무조합은 법무법인(유한)과 같은 취지와 배경에서 도입된 새로운 법률사무소 형태로서, 7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그 중 2인 이상이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법조경력 통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조합 역시 구성원 가입과 탈퇴, 당연탈퇴, 소속변호사,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설치,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의 수행, 업무집행방법,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변호사의 업무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법무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조합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무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무조합의 구성원에게는 법무법인(유한)과는 달리 출자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무법인(유한)과 같은 자본총실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담당 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한을 하고, 다른 구성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임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채무 이외의 법무조합의 채무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손실분담비율에 따른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것과 다르다.

법무조합도 법무법인(유한)과 마찬가지로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뢰인에 대한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와 같다.

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는 1968년경부터 변호사의 공증업무 취급을 요구하여 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로서 1970년 12월 31일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동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입된 것이나 1993. 3. 10. 공증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위 특례법상 관련 규정이 변호사법에 흡수되면서 변호사법에 관련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를 폐지한 2005. 1. 27.자 변호사법 개정에는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설립되지 않고 점차 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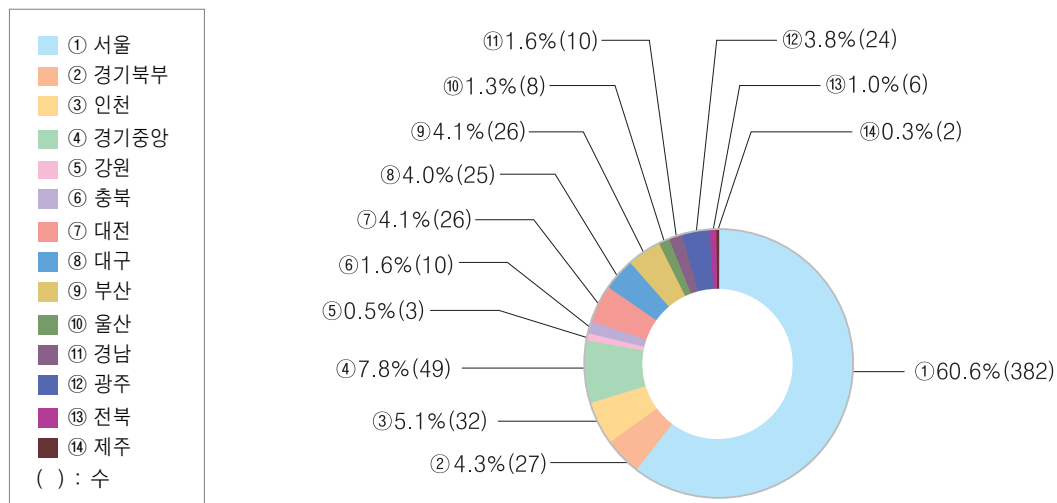
마.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른 공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는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법률사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공동법률사무소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도·감독을 위하여 1998년 6월 8일 신설·시행된 것이다.

2. 공동법률사무소 현황(2009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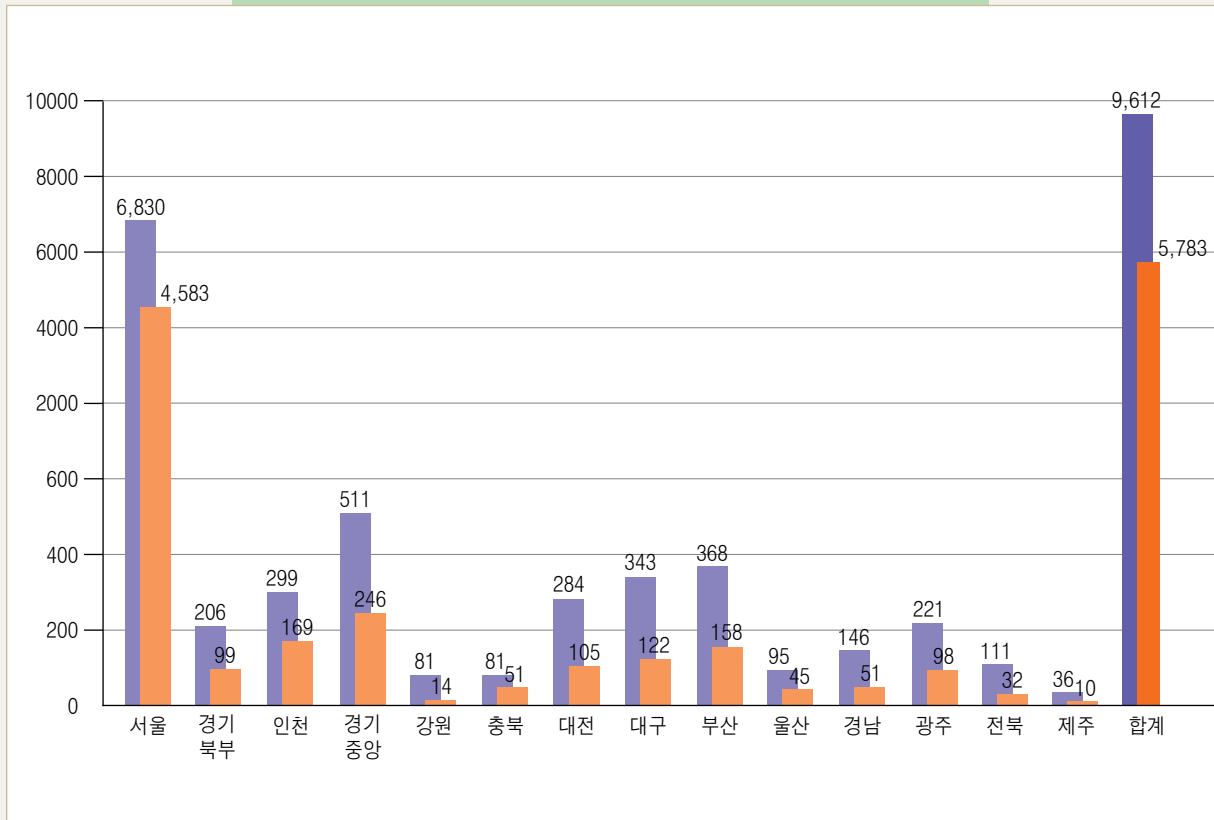
() 변호사 수

지역 \ 유형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		(회칙상)공동 법률사무소		지역별 합 계		분포비율 (%)
서울	278	(3,290)	6	(602)	33	(175)	65	(516)	382	(4,583)	60.6
경기북부	13	(65)	-	-	-	-	14	(34)	27	(99)	4.3
인천	26	(155)	-	-	2	(5)	4	(9)	32	(169)	5.1
경기중앙	46	(239)	-	-	1	(3)	2	(4)	49	(246)	7.8
강원	2	(10)	-	-	1	(4)	-	-	3	(14)	0.5
충북	10	(51)	-	-	-	-	-	-	10	(51)	1.6
대전	12	(63)	-	-	1	(3)	13	(39)	26	(105)	4.1
대구	16	(95)	-	-	7	(23)	2	(4)	25	(122)	4.0
부산	19	(137)	-	-	7	(21)	-	-	26	(158)	4.1
울산	8	(45)	-	-	-	-	-	-	8	(45)	1.3
경남	9	(49)	-	-	-	-	1	(2)	10	(51)	1.6
광주	11	(63)	-	-	7	(22)	6	(13)	24	(98)	3.8
전북	4	(22)	-	-	2	(10)	-	-	6	(32)	1.0
제주	1	(7)	-	-	1	(3)	-	-	2	(10)	0.3
합계	455	(4,291)	6	(602)	62	(269)	107	(621)	630	(5,783)	100.0



- 회칙상 공동법률사무소 통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된 사무소 현황을 수록함.
- 종래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무한연대책임 등으로 사무소를 대형화하는 데 큰 제약이 있었으나, 지난 2005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형태가 새로이 도입되고, 2008년에는 기존의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청산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의 세제혜택과 구성원, 자본금 요건을 더욱 완화함. 이에 따라 현재 법무법인(유한)은 6개(법무법인이 조직변경한 경우는 5개, 신설 1개)가 있으며, 법무조합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나, 향후 많은 변호사들이 법인과 조합 두 가지 형태의 법률사무소를 설립할 것으로 전망됨.
- 개인변호사의 분포(수도권 81.6%)와 마찬가지로 공동법률사무소도 전체의 77.8%가 수도권(서울은 60.6%)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업변호사 9,612명 중 60.2%(5,783명)가 법무법인 등 공동법률사무소 소속임.

지역별 변호사 대비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수



구분	서울	경기 북부	인천	경기 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합계
지역별 변호사 수	6,830	206	299	511	81	81	284	343	368	95	146	221	111	36	9,612
법무법인 및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수	4,583	99	169	246	14	51	105	122	158	45	51	98	32	10	5,783
비율(%)	67.1	48.1	56.5	48.1	17.3	63.0	37.0	35.6	42.9	47.4	34.9	44.3	28.8	27.8	60.2

3. 공동법률사무소 규모(2009년 말 기준)

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회칙상)공동법률사무소 전체

변호사 수	법인 수	변호사 수	법인 수	변호사 수	법인 수	변호사 수	법인 수	변호사 수	법인 수
2인 이하	71	11	9	23	1	38	1	86	1
3	46	12	8	24	1	41	1	95	1
4	33	13	5	27	1	46	1	99	1
5	200	14	5	28	1	50	1	130	1
6	88	15	6	29	1	57	1	176	1
7	47	16	7	30	1	60	1	187	1
8	29	17	2	33	1	73	1	202	1
9	28	19	1	35	1	77	1	204	1
10	17	20	1	36	1	82	1	348	1
총계									630

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수	법인 수	변호사 수	법인 수	변호사 수	법인 수	변호사 수	법인 수	변호사 수	법인 수
5인 이하	190	13	5	27	1	41	1	86	1
6	82	14	5	28	1	46	1	95	1
7	46	15	6	29	1	59	1	99	1
8	29	16	7	30	1	57	1	130	1
9	28	17	2	33	1	60	1	176	1
10	17	19	1	35	1	73	1	187	1
11	9	23	1	36	1	77	1	202	1
12	8	24	1	38	1	82	1	204	1
총계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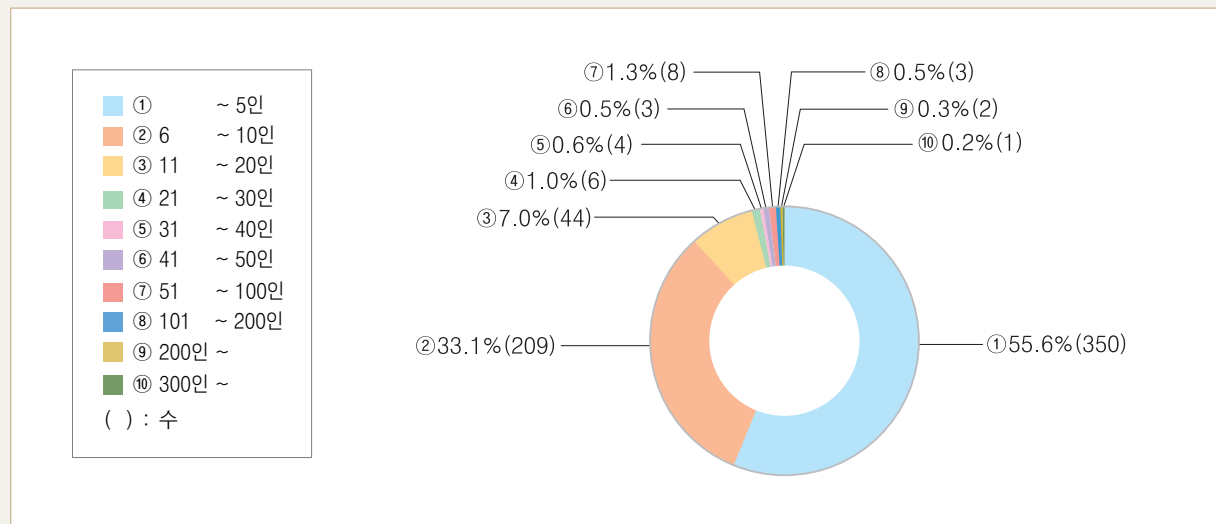
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분사무소

분사무소 수	법인 수	분사무소 수	법인 수	분사무소 수	법인 수
0	171	3	29	6	3
1	152	4	5	7	1
2	98	5	2	총계	461

라. 변호사 수에 따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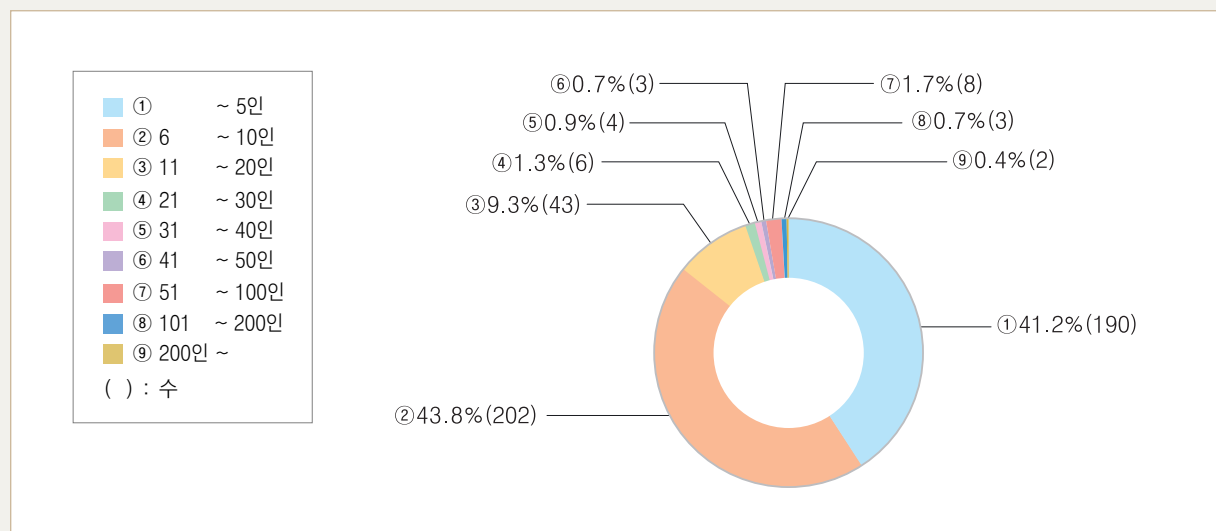
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회칙상)공동법률사무소 전체

변호사 수	~5인	6~10인	11~20인	21~30인	31~40인	41~50인	51~100인	101~200인	200인~	300인~	계
사무소 수	350	209	44	6	4	3	8	3	2	1	630
비율(%)	55.6	33.1	7.0	1.0	0.6	0.5	1.3	0.5	0.3	0.2	100



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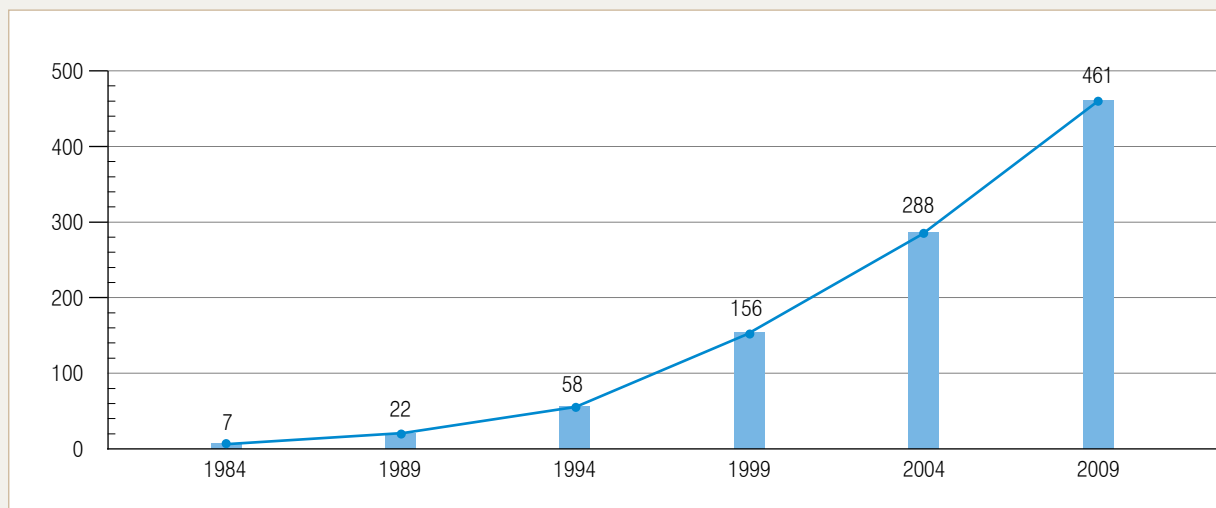
변호사 수	~5인	6~10인	11~20인	21~30인	31~40인	41~50인	51~100인	101~200인	200인~	계
사무소 수	190	202	43	6	4	3	8	3	2	461
비율(%)	41.2	43.8	9.3	1.3	0.9	0.7	1.7	0.7	0.4	100



- 법무법인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수에 따른 규모를 보면, 5인 이하가 5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6인에서 10인 사이가 33.1%를 차지하고 있어, 10인 이하의 사무소가 다수(88.7%)를 차지함.
- 대형 공동법률사무소의 기준을 100인 이상으로 볼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100인 이상의 사무소가 6개가 있으며, 가장 큰 사무소는 그 소속원이 348명임.
- 변호사 수 기준으로 상위 50개 공동법률사무소 중 인천 1개소, 수원 및 부산 각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소는 모두 서울에 소재함.

4.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증감 추이

연도	법인 수(유한 포함)			증감률 [(익년-전년)*100/전년]	연도	법인 수(유한 포함)			증감률 [(익년-전년)*100/전년]
	증	감	계			증	감	계	
1983	1	-	1	-	1997	25	1	118	25.5
1984	7	1	7	600.0	1998	26	2	142	20.3
1985	1	-	8	14.3	1999	15	1	156	9.9
1986	7	-	15	87.5	2000	33	4	185	18.6
1987	6	-	21	40.0	2001	30	4	211	14.1
1988	-	-	21	0.0	2002	31	6	236	11.8
1989	1	-	22	4.8	2003	30	7	259	9.7
1990	2	-	24	9.1	2004	38	9	288	11.2
1991	5	-	29	20.8	2005	38	8	318	10.4
1992	6	-	35	20.7	2006	49	11	356	11.9
1993	9	-	44	25.7	2007	55	7	404	13.5
1994	14	-	58	31.8	2008	49	19	434	7.4
1995	20	-	78	34.5	2009	58	31	461	6.2
1996	17	1	94	20.5	합계	573	112	461	



- 법률사무소의 전문화, 대형화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도입된 법무법인 제도는 시행한 지 26년이 경과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법무법인(유한)을 포함하여 총 461개임.
- 최근 2년간 법인 수는 설립으로 인한 증가와 함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감소 경향도 보이고 있음. 법무법인 간 합병은 사무소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초기에는 대형 법인 간의 합병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중소형 법인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2008~2009년에 10건 이상의 합병이 이루어짐.

5. 국내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의 해외진출 현황(2010년 4월 기준)

1) 중국(7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광장	북경	2	3	2005
대륙아주	상해	1	3	2002
	소주	0	1	2007
세종	북경	2	3	2005
	상해	1	1	2010
지평지성	상해	1	5	2007
에이팩스	북경	0	1	2009
정평	북경	1	7	2010
태평양	북경	5	1	2004
	상해	4	2	2008

2) 베트남(5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을촌	호치민	2	1	2007
	하노이	1	0	2010
지평지성	호치민	1	1	2007
	하노이	1	2	2009
로고스	호치민	1	3	2006
	하노이	1	3	2007
에이팩스	하노이	1	1	2008
정평	호치민	5	4	2006
	하노이	1	2	2006

3) 캄보디아(3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지평지성	프놈펜	1	1	2009
로고스	프놈펜	1	3	2007
에이팩스	프놈펜	1	5	2007

4) 우즈베키스탄(3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대륙아주	타쉬켄트	1	2	2007
에이팩스	타쉬켄트	0	1	2008
화우	타쉬켄트	1	3	2008

5) 러시아(2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대륙아주	블라디보스톡 (연락사무소)	0	0	2007
로고스	모스크바	0	3	2008

6) 미국(1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대륙아주	뉴욕	1	0	2008

7) 영국(1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대륙아주	런던	1	0	2007

8) 일본(1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화우	동경	1	0	2007

9) 라오스(1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지평지성	비엔티안	1	0	2009

10) 오스트리아(1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대륙아주	비엔나	1	0	2007

11) 몽골(1개)

진출 법인	도시	변호사 수		진출년도
		파견	현지	
대륙아주	울란바트로 (연락사무소)	0	0	2007

- 위 자료는 변호사 수 기준 상위 50위 법무법인(유한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총 10개의 법무법인(유한 포함)이 11개국에 진출한 상황임.
- 최다 진출국은 중국으로 총 7개의 법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외에 중앙아시아와 인도차이나 지역 등 우리나라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시장에 법인의 진출이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해외 시장 진출 및 투자에 수반하는 법률서비스를 투자국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장래 FTA 체결 등으로 국가 간 무역·서비스 장벽이 무너지면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뿐만 아니라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 또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